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69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지역 확대	2

I. 개요

1.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069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지역 확대

현 행	개정안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법 제71조의2 및 시행령 제68조의2) ○ 특례내용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 특례적용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u>인구감소지역</u>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u>광역시(군 제외)</u>,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 <u>9억원</u>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 4억원 이하 - 기존 1주택자가 <u>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u>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u>광역시(군 제외)</u>,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주택가액: 4억원 이하	□ <u>과세특례 지역 확대</u> ○ (현행과 같음) ○ 특례적용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u>인구감소지역</u>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 <u>4억원</u> 이하 - 기존 1주택자가 <u>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u>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주택가액: 4억원 이하 ○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승환의원안 2026. 2. 26. 발의(의안번호 17069)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¹⁾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²⁾ 및 종합부동산세³⁾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참고로, 동 과세특례는 당초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었으나, 지방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⁴⁾.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한편, 과세특례 요건은 ① 지역 요건 및 ② 취득가액 요건으로 구분⁵⁾되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각각 지역 요건과 취득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구분	지역 요건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취득가액 요건
인구감소지역	①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② 광역시(군 제외) ⁶⁾ ③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	<u>비수도권: 9억원 이하</u> <u>수도권: 4억원 이하⁷⁾</u>
인구감소관심지역	① 수도권 ② 광역시(군 제외) ③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	<u>4억원 이하</u>

4)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군과 자치구의 구분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하면 군은 농어촌지역, 자치구는 도시지역에서 지정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

□ 참고로, 인구감소지역⁸⁾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전국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⁹⁾은

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행정구역 조정기준 및 근거]

구분	조정 기준	관련 근거
시	<일반시> -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 - 시가지 구성지역내 인구가 전체의 60% 이상 - 도시적 산업 종사자가구가 전체가구의 60% 이상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 시의 평균 이상 - 인구밀도는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 제외)의 평균 인구밀도보다 상회 - 시가지 거주인구 및 도시적 산업 종사자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 경향	법률
	<도농 복합형태의 시> -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국가의 정책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인구가 3만 이상의 지역으로, 인구 15만 이상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일부	법률
군	없음	법률
자치구	없음	법률
자치구가 아닌 구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인 경우 - 단,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 지역은 예외	시 조례 (장관 승인)
읍	-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 - 시가지 구성지역 내 거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 - 도시적 산업 종사자가구가 전체가구의 40% 이상 - 인구 2만 미만의 경우로서 읍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 면	시·군 조례 (장관승인)
면	-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면행정 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 행정면의 운영: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2개 이상 → 1개면으로 운영	시·군 조례 (장관승인) 시·군 조례
동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 조례 (장관승인)
	행정동·리의 운영 :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고려 1개 → 2개이상, 2개 이상 → 1개로 운영	시·군·구 조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7) 접경지역의 주택은 취득가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장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전국 1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광역시(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2)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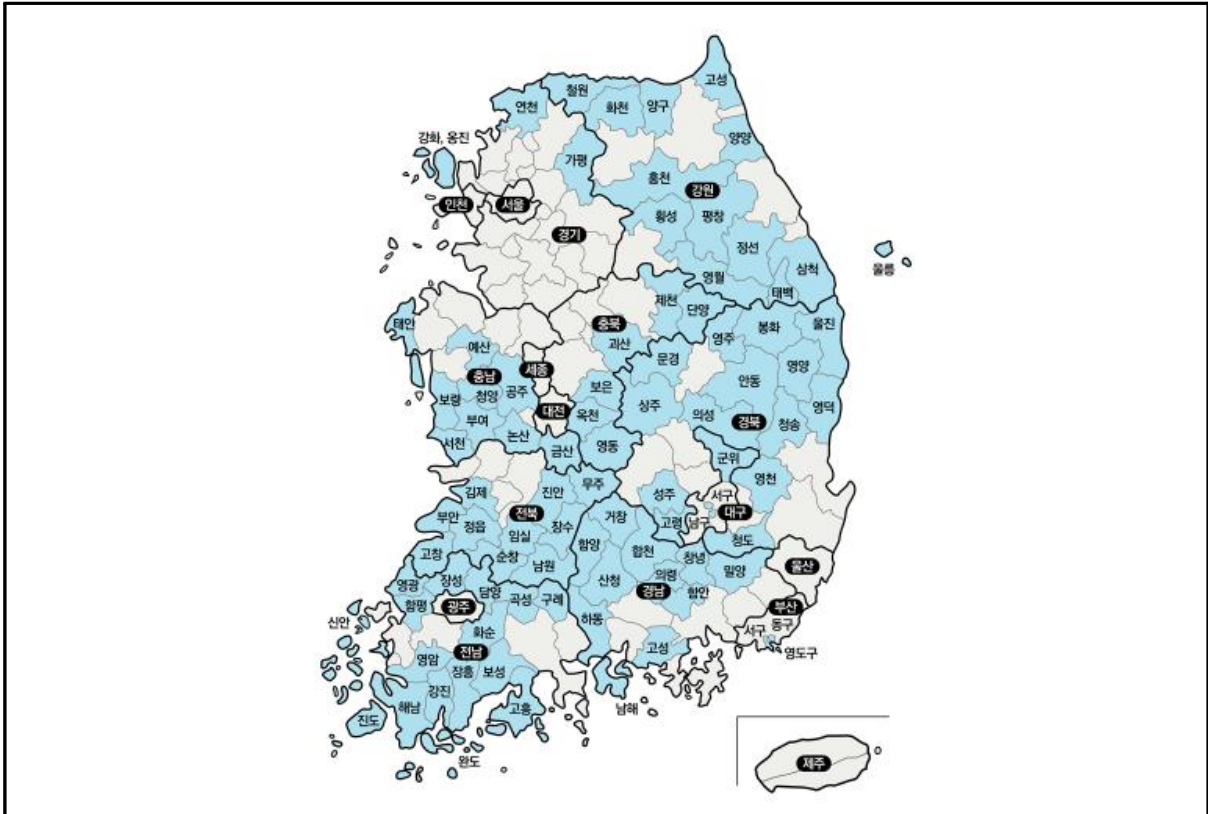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광역시(2)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1)	동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1)	익산시
경상북도(2)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2)	사천시, 통영시

자료: 행정안전부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 현행은 ① 광역시의 경우 군(郡) 지역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② 취득가액 요건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지역 요건을 완화¹⁰⁾하고, ② 취득가액 요건을 “4억원” 이하로 통일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과세특례 형평성을 제고하고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10)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개 지역이 추가[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광역시(2): 남구, 서구]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7개 지역이 추가[부산광역시(2): 금정구, 중구 / 인천광역시(1): 동구 / 광주광역시(1): 동구 /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기대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11) 및 「인구감소지역법」 12)은 광역시 내 군(郡)·구(區)를 구별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시 내 인구감소 구(區)가 광역시 소재라는 사유로 과세특례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기존 과세특례 적용 지역[비수도권 시(市)·군(郡)]에 대한 인구 유입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음. 즉, 광역시 내 구(區) 지역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 생활 편의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 구(區)에 인구가 유입되어, 기존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인구 유입을 대체(구축)하는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¹³⁾.

둘째, 개정안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과세특례 취득가액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함으로써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우려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¹⁴⁾.

문 의 처
02)6788-5150

13) 참고로, 「농어촌정비법」은 군(郡)을 농어촌으로, 광역시 자치구를 준농어촌으로 정의하여, 군(郡)과 구(區)를 구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대상을 군(郡)에 한정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군(郡)과 구(區)를 구별하여 군(郡)에만 혜택을 지원하는 입법례가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14) 재정경제부는 특례 적용지역을 광역시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 단위 인구 감소지역 등으로의 주거이전·인구유입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